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1가단51422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 조세형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2. 23.

판 결 선 고 2022. 3. 30.

주 문

1. 피고와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의 2019. 7. 23.자 56,72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43,296,0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3,296,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를 상대로 (1) 전주지방법원 2011가소10027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2. 16. 위 법원에서 ‘소외 C는 원고에게 7,643,330원 및 그 중 4,710,857원에 대하여 2001. 7. 17.부터 2012. 1. 20.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고,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64213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3. 29. 위 법원에서 ‘소외 C는 원고에게 13,983,030원과 그 중 4,347,773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위 판결들에 기한 채권액은 2021. 6. 15. 현재 43,296,020원이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C의 처분행위

1) C는 2017. 1.경 딸인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피고 명의로 개설한 E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해 오다가 2019. 7.경 폐업하였다.

2) C는 2019. 7. 23. (1) 피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변제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인 E은행에 25,100,000원을 대위변제하여 이를 증여하고, (2) 피고의 계좌에 31,62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다. C의 무자력

C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증여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바, 이처럼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C가 피고에게 합계 56,720,000원(= 25,100,000원 + 31,620,000원)의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는 이 사건 증여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한 돈은 C가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고모인 H이 피고를 지원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9. 6. 24. 및 2019. 7. 23. C가 이용하는 피고 명의 계좌에 ‘H 호텔’ 명의로 각 88,000,000원(합계 176,000,000원)이 입금되어 C가 즉시 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위와 같이 피고의 근저당권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여 증여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위 돈은 C와 H 사이의 사업상 거래 때문에 입출금된 것으로 보일 뿐 H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

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액인 43,296,0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3,296,0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백규

1) 피고는 2022. 3. 21.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C와 고종사촌인 H이 2019. 7. 18. C 처의 요청으로 피고를 지원한다는 마음에서 88,0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H 명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는바, 결국 위 주장 취지는 C가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그 돈으로 피고의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인정에 배치되지 않는다.